

- 조직개편 등에 따른 -
일제정비 사규 공포문

2026. 8.

1. 경영평가 등에 관한 규정	4
2. 제안규정	5
3. 차량관리규정	6
4. 인사규정	7
5. 공무원 관리규정	9
6. 회계규정	10
7. 사규관리규정	14
8. 인사규정 시행내규	15
9. 기술자문위원회 운영내규	18
10. 계정과목별 지출방법 등에 관한 예규	19

<공통사항>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가. 직제규정(규정 제736호, '26. 7. 1. 공포·시행) 및 직제규정 시행내규(내규 제681호, '26. 7. 1. 공포·시행)의 개정에 따른 기구 및 직위명칭 변경
- 나. 법령, 정부·인천광역시 방침, 정관 및 상위 사규의 변경으로 인한 제명, 인용조문 및 개정내용 반영
- 다. 단순 자구수정, 별표 및 서식개정 등 내용이 경미한 사항
- 라. 법제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순화대상 법률용어 및 문장

2. 사전절차

- 가. 홈페이지 사전게시 및 입안예고 생략
 - 1) 사규 입안예고제 시행내규 제4조, 사규관리규정 제12조의4
- 나. 사규심의위원회 심의 생략
 - 1) 사규관리규정 제13조
- 다. 이사회 부의 생략
 - 1) 사규관리규정 제4조의2
- 라. 조직개편 등에 따른 일제정비 계획(안)[법무기준처-2279(2026. 7. 13.)호]

경영평가 등에 관한 규정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인천도시공사 사장 류 윤 기

2026년 8월 31일

규정 제739호

경영평가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

경영평가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경영목표 설정을 위한 지침작성) 사장은 다음연도의 경영목표 설정을 위한 세부지침을 작성하여 각 부서의 장([정보보안실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게 시달하여야 한다.

부칙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안규정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인천도시공사 사장 류 윤 기

2026년 8월 31일

규정 제740호

제안규정 일부개정

제안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의견조회) ① (생략)

② 제1항의 요구를 받은 부서장(도시연구소장, 정보보안실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1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을 결정하고 의견을 회신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을 경우 제안담당부서와 협의하여 회신 기간을 1회에 한하여 5일 이내로 추가 연장할 수 있다.

1. ~ 2. (생략)

③ (생략)

제13조(설치 및 구성) ① ~ ② (생략)

③ 각 위원회의 구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은 제안제도 주관부서 팀장으로 하며, 위원은 본부별 주무처의 주무팀장과 감사팀장 및 도시연구팀장으로 한다. 단, 위원장은 필요 시 제안사항과 관련되는 팀장 중에서 위원을 추가로 지명할 수 있다.

2. (생략)

④ ~ ⑥ (생략)

부칙

차량관리규정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인천도시공사 사장 류 윤 기

2026년 8월 31일

규정 제741호

차량관리규정 일부개정

차량관리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고정배차차량의 감축) ① 차량관리부서는 고정배차차량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매년 고정배차차량의 감축을 검토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차량관리부서는 매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제17조의 운행일지를 근거로 하여 고정배차차량이 다음 각 호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고정배차차량을 공용배차차량으로 귀속하거나, 임차계약을 해지하여 차량을 감축할 수 있다.

1. 고정배차 전체 차량의 3개년 평균 운행거리의 하위 50%에 포함될 경우
 2. 고정배차 전체 차량의 3개년 평균 운행횟수의 하위 50%에 포함될 경우
- ③ 당해 연도 신규임차 차량은 사용기간 동안의 운행거리 및 운행횟수를 1년으로 환산하여 계산한다.

부칙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인사규정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인천도시공사 사장 류 윤 기

2026년 8월 31일

규정 제742호

인사규정 일부개정규정

인사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승진소요 최저연수) ① (생략)

1. ~ 2. (생략)

② 제1항의 직급별 승진소요연수 산정은 휴직기간, 직위해제기간, 징계처분기간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기간은 제1항의 기간에 합산한다.

1. 제40조제2호 공상휴직, 제3호 병역휴직, 제4호 법정휴직, 제6호 육아휴직, 제7호 가족돌봄휴직(연간 90일까지) 및 제9호 공무상 유학·고용휴직의 휴직기간

2. (생략)

③ 전환형 시간선택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가족돌봄 등을 위한 근로시간 단축 근로자의 승진소요 최저연수는 다음과 같이 한다.

1. (생략)

2. 육아휴직 대상 근로자가 육아휴직 기간 중 사용하지 아니한 기간을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에 사용한 경우 자녀 1명에 대하여 육아휴직 및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근무를 사용한 합산기간은 1년을 넘는 경우에는 최대 1년을 승진소요 최저연수에 산입하되, 둘째 자녀부터는 최대 3년까지를 승진소요 최저연수에 산입한다.

3. ~ 4. (생략)

④ ~ ⑥ <생 략>

부칙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공무직 관리규정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인천도시공사 사장 류 윤 기

2026년 8월 31일

규정 제743호

공무직 관리규정 일부개정

공무직 관리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의2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의2]

정원표(제4조 관련)

소 속	합 계	가군(시설관리)	나군(사무·행정)	다군(관리)
합 계	47	16	12	19
경영관리처	28	7	2	19
도시균형처	1		1	
주거복지처	9		9	
시설관리처	9	9		

회계규정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인천도시공사 사장 류 윤 기

2026년 8월 31일

규정 제744호

회계규정 일부개정규정

회계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적용범위) 인천도시공사(이하 “공사”라 한다) 회계에 관하여 이 규정과 「지방공기업법」(이하 “공기업법”이라 한다)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지방재정법」,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인천광역시 재무회계 규칙」, 「인천광역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인천광역시 물품관리 조례」, 예산회계 관련 법령 및 지방공기업 결산기준 및 일반 기업회계기준을 준용한다.

제12조(계정과목) ① 계정과목의 설정 및 분류는 지방공기업 결산기준 및 일반 기업회계기준에 의한다.

② (생략)

제83조(자산의 구분) 자산의 구분은 지방공기업 결산기준 및 일반기업회계기준에 따른다.

제84조(재무상태표 작성기준) ① 재무상태표 작성기준은 지방공기업 결산기준 및 일반기업회계기준에 따른다.

② (생략)

제85조(자산의 평가기준) 재무상태표에 기재하는 자산의 가액은 지방공기업 결산기준 및 일반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처리한다.

제86조(자산의 재평가) ① (생략)

② 자산의 재평가는 「자산재평가법」, 감정평가 관련법령, 지방공기업 결산기준 및 일반기업회계기준 및 기타 관계법률 등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106조(감가상각누계액) 감가상각누계액의 표시는 지방공기업 결산기준 및 일반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처리한다.

제114조(무형자산의 범위와 평가) 무형자산의 범위 및 평가는 지방공기업 결산기준 및 일반기업회계기준에 따른다.

제138조(보조금) 국·시비보조금 또는 기타의 보조금은 지방공기업 결산기준 및 일반기업회계기준에 따라 회계처리 한다.

제174조(채권범위 및 준용법령) 공사의 채권은 반복적인 사업수익으로부터 발생하는 미수금과 비반복적인 영업외수익으로부터 발생하는 기타미수금으로 구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관리하되, 그 구분은 지방공기업 결산기준 및 일반기업회계기준에 의한다.

제90조(유동자산의 분류) 유동자산은 지방공기업 결산기준 및 일반기업회계기준에 따라 분류하고 세부 항목은 시행내규로 정한다.

제91조(당좌자산의 범위) 당좌자산의 범위는 지방공기업 결산기준 및 일반기업회계기준에 따르되, 세부 항목은 시행내규로 정한다.

제92조(채권 등에 대한 대손충당금의 표시) 채권 등에 대한 대손충당금의 표시는 지방공기업 결산기준 및 일반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처리한다.

제93조(유가증권의 평가) 유가증권의 평가는 지방공기업 결산기준 및 일반기업

회계기준에 따라 처리한다.

제94조(재고자산의 범위) 재고자산의 범위는 지방공기업 결산기준 및 일반기업회계기준에 따르되, 세부 항목은 시행내규로 정한다.

제95조(재고자산의 평가) 재고자산의 평가는 지방공기업 결산기준 및 일반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처리한다.

제96조(비유동자산의 분류) 비유동자산은 지방공기업 결산기준 및 일반기업회계기준에 따라 분류하되, 세부 항목은 시행내규로 정한다.

제97조(투자자산의 범위) 투자자산의 범위는 지방공기업 결산기준 및 일반기업회계기준에 따르되, 세부 항목은 시행내규로 정한다.

제98조(투자유가증권의 평가) 투자유가증권의 평가는 지방공기업 결산기준 및 일반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처리한다.

제99조(유형자산의 범위) ① 유형자산의 범위는 지방공기업 결산기준 및 일반기업회계기준에 따르되, 세부 항목은 시행내규로 정한다.

② 임대자산에 속하는 토지 및 건물에 대하여는 지방공기업 결산기준 및 일반기업회계기준에 따르되, 세부 항목은 시행내규로 정한다.

제100조(유형자산의 평가) 유형자산의 평가는 지방공기업 결산기준 및 일반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처리한다.

제115조(부채의 분류) 부채는 지방공기업 결산기준 및 일반기업회계기준에 따라 분류하되 세부 항목은 시행내규로 정한다.

제116조(부채성충당금) 부채성충당금은 지방공기업 결산기준 및 일반기업회계기준에 따른다.

제117조(퇴직급여충당금) 퇴직급여충당금은 지방공기업 결산기준 및 일반기업 회계기준에 따른다.

제118조(자본의 분류) 자본의 분류는 지방공기업 결산기준 및 일반기업회계기준에 따르되, 세부 항목은 시행내규로 정한다.

제119조(자본잉여금 등) 자본잉여금, 자본조정, 기타 포괄손익누계액은 지방공기업 결산기준 및 일반기업회계기준에 따른다.

제120조(이익잉여금 또는 결손금) 이익잉여금 또는 결손금의 과목은 지방공기업 결산기준 및 일반기업회계기준에 따른다.

제155조(결산) ① ~ ② (생략)

③ 결산을 수행함에 있어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지방공기업 결산기준 및 일반기업회계기준에 따른다.

부칙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사규관리규정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인천도시공사 사장 류 윤 기

2026년 8월 31일

규정 제745호

사규관리규정 일부개정

사규관리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위원회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당연직 위원 및 지명직 위원으로 위원장이 구성하며, 위원장은 투자유치본부장이 된다.

② ~ ⑤ (생략)

⑥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주관부서 팀장이 된다.

부칙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인사규정시행내규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인천도시공사 사장 류 윤 기

2026년 8월 31일

내규 제685호

인사규정 시행내규

인사규정 시행내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27호 서식 및 별지 제29호 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27호 서식]

서약서(제19조제2항 관련)

○ 성 명:

○ 생년월일:

상기 본인은 귀 공사에 입사함에 있어 공사의 명예를 빛내는데 솔선수범하고, 공사의 제반규정과 명령을 이행함은 물론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1. 임용시 귀 공사에 제출된 서류 중 허위사실이 드러난 경우, 귀 공사의 인사규정에 의한 결격사유가 발견된 경우, 부정합격이 확인된 경우 또는 타기관 재직 중으로 임용일 전일까지 의원면직 처리가 되지 않았음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언제라도 임용 취소 또는 해임 등 조치에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음.
2. 공사의 기밀사항과 기타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 재직 중은 물론 퇴직 후에도 이를 누설하지 않겠음.
3. 직무 이외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아니 하며, 사장의 허가없이 다른 직무를 겸하지 않겠음.
4.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공사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발생하게 하였을 때에는 그 책임을 지며, 손해를 배상하겠음.

년 월 일

위 서약인 성명 (인)

인천도시공사 사장 귀하

결격사유 해당 시 임용취소 동의 서약서

본인은 귀 공사 「인사규정」 제11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음을 확인하고, 임용 이후 결격사유가 발견되었을 경우 귀 공사의 임용 취소 또는 당연퇴직 등의 조치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인사규정 제11조(결격사유)】

- 1. 「지방공무원법」 제31조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
- 2.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에 따른 비위 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적용을 받는 자

년 월 일

위 서약인 성 명 (인)

인천도시공사 사장 귀하

기술자문위원회 운영내규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인천도시공사 사장 류 윤 기

2026년 8월 31일

내규 제686호

기술자문위원회 운영내규 일부개정

기술자문위원회 운영내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원은 해당 심의대상 안건의 심의에서 제척된다.

- 1. ~ 4. (생략)
- 5. 위원이 최근 5년 이내에 해당 심의 대상 업체에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 한 경우
- 6. ~ 11. (생략)

부칙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계정과목별 지출방법 등에 관한 예규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인천도시공사 사장 류 윤 기

2026년 8월 31일

예규 제52호

계정과목별 지출방법 등에 관한 예규 일부개정

계정과목별 지출방법 등에 관한 예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인건비) ① 인건비는 임직원 및 운동경기부에 대한 급여, 제 수당, 직급 보조비 및 성과급 등과 「소득세법 시행령」 제38조에 의하여 근로소득으로 보는 모든 예산항목으로 하되, 반드시 임직원 **계좌**로 송금하여야 하며 소관부서는 인건비 지급 시 전산시스템상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이 출력가능 하도록 입력하여야 한다.

② ~ ③ (생략)

제25조(기타소득 등) ① (생략)

② 외부인에 대한 기타소득 등의 지급은 「소득세법」 등에 따라 원천징수 후 당해 기타소득자 등의 **계좌**로 송금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기타소득에 한하여 원천징수영수증과 당해 기타소득자가 서명 또는 날인한 수령증을 구비한 경우에는 현금으로 지출할 수 있다.

③ (생략)

제26조(경조사비) ① 임직원에게 대한 경조사비는 현금으로 지출하거나 당해 임직원의 **계좌**로 입금하되 반드시 공사명의로 지출하여야 한다.

② (생략)

제33조(업무추진비) ① ~ ③ (생략)

④ 제3항의 경우 출장 복귀 즉시 사후품의서 및 지출결의서를 개인 신용카드 매출전표 또는 기타 현금사용영수증을 첨부하여 작성하여야 하며, 지출담당부서는 관련 증빙서류 검토 후 해당 임직원의 **계좌**에 사용금액을 입금하여야 한다.

제37조(동호회지원비) ① 공사 임직원 등이 조직한 동호회에 대한 지원비는 해당 동호회의 대표 직원 1인의 **계좌**로 선입금하고 수령증을 구비하여야 한다.

② ~ ③ (생략)

부칙

이 예규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